

서울특별시



우100 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360-111

시행일자 1993.1.23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훈령발령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은		
법제계장	문		
기안	장학준		
			협조

1.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과 데스크 입력 대상 문서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759

1.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발령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도로시설과장

참조 훈령발령 통보

1. 도설30500-86(93.1.27)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생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93 년 2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이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불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공공시설불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24조, 하수도법 제8조, 하천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유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차도, 보도,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터널, 교량, 위체시설, 도로부속물(경계석, 측구, 중앙녹지대, 맨홀, 빗물받이, 가로등, 보안등, 난간, 램프, 도로옹벽, 공동구, 방음벽, 재방송시설 등) 및 하천(하천복개), 하천부속물(수문, 육갑문), 구거, 하수도(차집관거와 그 부대시설 포함) 등 기타 도로상 시설물과 하수가스배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을 말한다.
3. "유지보수공사"라 함은 시설물로서의 기능유지 및 중대를 위한 시설물개량 또는 보완을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을 보전함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소속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 4 조 (관리청의 지정) ① 시설물의 관리청은 관할구청장이 된다. 다만, 구간 경계선에 걸쳐있는 시설물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된 관할구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지정된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순찰) ①관리청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순찰계획을 수립하고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순찰결과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유지보수공사부서에 통보하고 정비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책임자는 순찰 및 정비결과에 대한 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①유지보수공사부서의 장은 점검목록(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8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자체보관 하여야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시설물 및 차집관거에 대하여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 원1회이상 하수가스 발생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하수가스 채취장소는 관리청과 연구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하수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지점을 우선 선정한다. 이때 주변토지 이용상태 및 하수가스 발생원인이 되는 지역내 사업장의 종류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수가스 조사요청이 있을 때는 연구원장은 즉시 시료를 채취, 시험하고 그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수시 확인하여 시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관부서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 8 조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 ①유지보수공사부서의 장은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현황, 보수개요, 현황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계규정)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아래 각호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2.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품질관리 규정
7.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지침등

제 10 조 (상시보수) 관리청은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공사부서에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정기보수) ①춘계보수는 해빙기에 대비한 전반적인 보수와 하절기의 강우및 홍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중점적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추계보수는 원동에 대비한 보수와 동계 적설 및 결빙을 예상한 소요자재의 비축과 장비의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정기보수는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긴급보수) 관리청은 재해발생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긴급보수가 불가피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지보수공사부서에 통보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치서류)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있는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작업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시설물 관리카드
4.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카드
5. 기타 보고서류및 증명서류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구분	구칭장	건설사업소장	비고
도로	업무내용	· 도로의 보수 등 관리청으로서의 총괄적인 유지관리	·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대상	·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건설사업소 소관이외 도로및 도로부속물임체의 유지보수 - 보도, 맨홀, 중앙분리대 - 난간, 램프, 방음벽, 공동구, 도로옹벽 - 가로등, 보안등, 재방송시설 - 기타 도로부속물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자동차전용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업무내용	·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청으로서의 총괄적인 유지관리	·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대상	· 폭20m미만 도로상에 건설된 교량 · 터널,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 건설사업소 소관이외의 도로시설물 임체 · 건설사업소 소관시설물을 포함한 모든시설물의 청소, 난간도색, 배수구 정비	· 폭20m이상 도로상에 건설된 교량 · 자동차전용도로상 교량 · 한강상교량 · 임체교차시설 · 고가차도

○ 하천 및 하수시설물

구 분		구 청 장	한강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사업소장	비 고
하 천 시 설 물	업무내용	· 직할 지방 준용 · 하천 및 시설물의 · 유지관리(한강 · 제외)	· 한강 유지관리 (교량, 도로 및 하수 · 차집관거 등 기능별 · 시설물 제외)		
	대 상	· 빗물펌프장 · 육갑문, 수문 · 하천제방, 호안공 · 수제공, 유수지 등 · 직할 지방 준용 · 하천(한강제외)	· 한강		
하 수 시 설 물	업무내용	· 하천복개구조물 · 유지관리 · 한강이외의 차집 · 관거 및 부대시설 · 유지관리(하천내 · 차집관거 준설 · 제외)		· 한강의 차집 · 관거 및 부대 · 시설 순환 및 · 유지관리 · 처리구역내의 · 하천차집관거 · 준설	
	대 상	· 하천 복개구조물 · 하수관거 및 하수 · 도 부대시설 · 한강이외의 차집 · 관거 및 부대시설		· 한강분류상의 · 차집관거 및 · 부대시설물	

- . 시설물명 :
- . 점검일자 :
- . 점검자 : (인)

분야별	점검 목록	미비 사항	주치 사항	비고
청소 상태	1. 천정 2. 벽체, 구체 3. 노면, 상판, 바닥, 출입구 4. 난간, 계단, 논스립타일			
구조물 파손 상태	5. 빔(BEAM), 거더(GIRDER), 상판 6. 슈 및 받침대 7. 교각기초(세굴, 부식) 8. 압거, 복개스라브 9. 계단, 난간, 관리실 10. 터널구체, 미장벽 11. 신축이음			
누수 상태	12. 천정, 용벽, 터널구체 13. 벽체(백화현상) 14. 바닥			
도장 상태	15. 천정, 입구 16. 교각, 난간, 빔, 강재보 17. 랙스, 가드레일, 방음벽 18. 통과높이 표시판			
배수및 노면 시설물 상태	19. 홈통, 측구의 배수및 준설 20. 배수로, 맨홀상대(뚜껑요청) 21. 방향및 교통표지판 22. 차도육교, 보도육교의 낙수 23. L형측구, 경계석의 침하 24. 차도의 침하균열 25. 보도의 침하파손 26. 기타 부대시설물의 파손 27. 도로상 공사장 정리상황 28. 배수펌프 작동상태			

<별지 제2호 시식>

하천및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 . 시설물명(구간) :
- . 점검일자 :
- . 점검자 : (인)

분야별	점검 목록	미비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북개 구조물	1. 상판마모및 균열 2. 북개스라브 저면부식 3. 저판및 기초세굴 4. 신축이음 5. 맨홀 6. 가스배기시설			
하천 구조물	7. 제방천단및 소단 8. 범면및 고수부지 유실 9. 하천구역 내외 수목경작 10. 하천공작물 11. 호안시설물 12. 하상요철(웅덩이) 기타			
개거 (웅벽)	13. 기초세굴 14. 침하, 활동 15. 구체균열			
하수관거 및 부대 시설	16. 관거파손 17. 관거내 이물질 퇴적 18. 관거맨홀뚜껑 망실및 파손 19. 빗물받이, U형측구통 뚜껑망실 및 파손 20. 고지수로 맨홀, 준설상태			
차집관거	21. 구조물 손괴, 퇴적상태 22. 맨홀뚜껑망실및 파손, 개폐상태 23. 우수토실및수문 기능및이물질 퇴적 24. 가스배기시설 손상, 파손 25. 청소용구 투입구 망실, 파손 개폐상태			

밋물 펌프장 점검보고서

○ 펌프장명 : 밋물 펌프장
 ○ 시설규모 : 모터 펌프 (HP) × 대, 엔진펌프 (HP) × 대
 ○ 점검일자 : 1991년 월 일
 ○ 점검자 : (직) (성명) (인)

분야명	시설분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의견
가전분야	변전실	1. 특고압 기기 및 선로상태(크래프터미널, 예자 등) 2. 접지상태 3. 보호장치 상태 4. 절연저항 측정 5. 변압기 붓상상태 및 주유		
	수배전반	1. 배전반 각 기기 상태 2. 밋테리 및 정류장치 기능 3. 크레인 작동상태		
	기계실	1. 모터펌프 상태, 디젤엔진 상태 2. 구리스펌프(냉각수) 상태 3. 크레인 작동상태 4. 기타 기계시설 고인물 완전배수 여부		
	기타	1. 배수분(전동장치)의 작동상태 2. 누전(고압, 저압) 여부 3. 기타 화재예방 상태 4. 소화기 비치여부		
토목 일반분야	배수관로	1. 관연 여부 2. 침하 여부 3. 압기 파손 여부		
	수분	1. 수분구조물 관연여부 2. 분비 주위철 호물, 토사 여부 3. 분비 고무마킹 보호여부 4. 경고판 부착상태 5. 맨홀, 키 보관상태		
	유수지	1. 바닥 준설상태 2. 도수로 정비상태		
	호안브릭	1. 호안브릭 침하여부		
	웬스	1. 웬스 파손 여부		
	건물, 축대	1. 관연 여부 2. 침하 여부 3. 기타		
	인반상태	1. 주위 환경정비 상태 2. 관리원 근무상태		

<별지 제4호 시식>

수 문 점 검 표

점검자 직명 :

구칭명 : 수문명 : 위치 : 성명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1. 권양기 작동여부		
2. 문비완전 개폐여부		
3. 문비 휴통상태		
4. 문비활동판 및 바킹상태		
5. 핸드레버 관리 상태		
6. 전기시설 연결상태		
7. 브레이크 작동상태		
8. 압거내 준설상태		
9. 압거내 균열상태(전면적)		
10. 수문상자내 사다리상태		
11. 감속기 등 기어 구리스 주입여부		
12. 수문자체 부식 여부		
13. 수문상자 구체파손 여부		
14. 도색상태		
15. 관리자 지정여부(성명)		
16. 수문대장 관리상태		
17. 수문원쇠 관리상태		
18. 경고판 관리상태		
19. 수문관리자 수문 개폐시기 인지여부		
20. 부품확보 상태(조작스위치, 휴즈 마크네트, 구리스, 동판, 고무판 등)		

<별지 제5호 서식>

순찰임지

일시	위치	적출사형	처리부서	통보일자	순찰자		검재		비고
					직명	성명	계장	과장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임지

일시	작업위치	개요	적출	보수	통보	검재		비고
			통보일	완료일	기관	계장	과장	